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7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김성원・이종배・김선교

서일준 · 김정재 · 임이자

박성훈 • 백종헌 • 정동만

김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 권리구제절차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위법 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·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 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함.

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됨.

이에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에 의거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모금액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모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기금의 모금) ①・② (생	제16조(기금의 모금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모금액을 부과받은 자가 부
	과된 모금액에 대하여 이의가
	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
	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
	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
	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
	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
	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
	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
	한다.